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349
----------	-----

제출년월일 : 2021. 4.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안 제1조~안 제2조)
- 나. 적용범위, 책무 등 (안 제3조~안 제4조)
- 다.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사업추진 및 지원(안 제5조~안 제6조)
- 라. 지원센터, 추진위원회(안 제7조~안 제8조)
- 마. 표창, 준용(안 제9조~안 제1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나. 예산조치 : 2022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
-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기 타 :

- 1) 입법예고(2021. 3. 18. ~ 2021.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의견 반영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평창군 군민의 자율적이고 창의적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해당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한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지정 신청으로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등)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지속적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1. 군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계획의 수립에서 제 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고려
2. 제1호에 따른 주요계획의 성과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 도시재생 촉진, 공동체 회복 등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② 모든 군민과 문화도시 관련 군 소재 법인·단체 등(이하 “법인·단체 등”이라 한다)은 그 조성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체계적 조성을 위하여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방향
2. 문화도시 조성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및 지원범위
3. 추진조직 및 문화네트워크의 구축·운영
4.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

나. 진흥 및 기반조성

다. 필요한 전문 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

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

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창업활동

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

2. 조성사업의 추진

3. 선진지 답사 및 반영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 채용, 복무,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①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
2. 조성사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반영
3. 포럼, 초청강연, 학술세미나, 토론회 등 개최방안
4. 센터의 설치 및 운영
5. 그 밖에 군수가 문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문화도시 관련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건설국장,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전문가 및 활동가

다.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등의 관계자.

라. 평창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표창) 군수는 조성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뛰어난 군민,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조성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회의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수당·여비 등 지급, 제9조의 표창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평창군포상조례」 등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6조(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문화적·역사적 정체성, 창조성, 예술성 등 문화도시로서의 기초여건을 토대로 시·도지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승인받은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일부터 1년 동안 예비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른 예비사업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문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예비사업의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라 예비사업의 기간이 연장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도시 지정에 관하여는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 예비사업의 실시 및 기간 연장, 문화도시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군수는 문화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산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업
 - 가. 균형발전 및 특성화
 - 나. 진흥 및 기반조성
 - 다. 필요한 전문 인력(청년활동가, 전문가 등을 말한다)의 양성
 - 라. 문화예술 및 생활문화 육성
 - 마. 관련 시설 확충 및 기술개발·창업활동
2. 다양하고 창의적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국내외 문화네트워크 구축·운영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조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세부적 수립 및 시행
2. 조성사업의 추진
3. 선진지 답사 및 반영
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센터에는 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센터장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이에 관한 정원, 채용, 복무, 보수,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 ③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전반적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구축·운영으로
예시도시 및 본 법정 문화도시 지정을 통해 올림픽과 문화적 도시재생을 결합한 도시브랜드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근거 마련
나. 추계 결과(연간)

구분	내역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비고
	합계		20,700,000	
2022년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평창군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비	200,000	군비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 운영	500,000	군비
2023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사업 운영	4,000,000	국비 50% 군비 50%
2024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사업 운영	4,000,000	국비 50% 군비 50%
2025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사업 운영	4,000,000	국비 50% 군비 50%
2026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사업 운영	4,000,000	국비 50% 군비 50%
2027년	문화도시 사업 추진	평창군 문화도시 사업 운영	4,000,000	국비 50% 군비 50%

다. 재원조달 방안 : 2022년 ~ 2027년 당초예산 편성

3. 작성자

작성자	평창군 문화관광과장 이시균
연락처	(033) 330 - 2250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계
세 입							
세 출		7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4,000,000	16,700,000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센터 운영 (군비)	200,000					200,000
	문화도시 예비도시 사업 추진 (군비)	500,000					500,000
	문화도시 사업 추진 (국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문화도시 사업 추진 (군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자원 조달							
의존 자원	소 계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보조금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000,000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7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700,000
	지방세						
	세외수입						
	군비	7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2,000,000	8,700,0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